

개인정보위, 교육·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

- 국민이 교육·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향후 개정 완료 시, 대학의 학적·수강 등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·구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·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(이하 ‘보호법’) 시행령」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8월10일까지(41일) 입법예고한다.

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.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. 현재는 의료, 통신,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으나, 국민 체감도, 민간의 데이터 수요,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*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.

* '25년 보건의료·통신 → '26년 에너지·교육·고용·문화여가 → '27년 복지·교통·부동산·유통

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,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되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·수강·성적·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·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. 예를 들어,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,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<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대상정보 세부 기준>

제3자대상 정보전송자	교육	가국립대학, 나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명 이상 공·사립대학
	고용	가한국고용정보원, 나「고용정책기본법」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에 준하는 자) 중 기술적·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
전송요구 대상정보	교육	개인정보위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, 학적·수강·성적·졸업 등에 관한 정보
	고용	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, 가「고용정책기본법」에 따라 수집·관리하는 고용·직업정보, 나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신청정보 및 입사지원정보

또한,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(본인대상 정보전송자)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.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,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했다.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(<http://www.pipc.go.kr>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8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개인정보위 관계자는 “이번 제3자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·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 “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은경	(02-2100-31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애	(02-2100-3172)



조항	현행(8.20.시행)	개정안
<p>자료제출 요구 (영 제13조 제1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주체의 열람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·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주체의 열람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, <u>전송</u>,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
<p>제3자대상 정보전송자 (영 제42조의2 제2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, 통신, 에너지정보 전송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의료정보전송자(질병청 건보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그 외 고시 위임) - 통신정보전송자(이통통신3사 그 외 고시 위임) - 에너지정보전송자(한전 그 외 고시 위임) 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, 통신, 에너지정보 전송자: 현행과 동일 ○ <u>교육, 고용정보 전송자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정보전송자(국립대학, 재학생 2만명 이상 공·사립대학) - 고용정보전송자(한국고용정보원, 그 외 고시 위임)
<p>제3자전송 요구대상 정보 (영 제42조의4 제2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, 통신, 에너지전송 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의료전송정보(진료조제기록 및 관련 생성 정보, 의료기기 생성수집 정보 그 외 고시 위임) - 통신전송정보(가입·이용·이용요금 청구납부정보) - 에너지전송정보(에너지 사용량, 요금 청구납부정보, 그 외 고시 위임) 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, 통신, 에너지전송 정보: 현행과 동일 ○ <u>교육, 고용전송정보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전송정보(학적, 수강·성적, 졸업정보, 그 외 고시 위임) - 고용전송정보(고용·직업정보, 구직신청·입사지원 정보, 그 외 고시 위임)

조항	현행(8.20.시행)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전송 요구대상 정보</p> <p>(영 제42조의4 제1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인전송제외 대상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인의 권리·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-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,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- 일방향 암호화 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인전송 제외 대상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인의 권리·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-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,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<후단 삭제> - 일방향 암호화 정보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대상 정보전송자 의무</p> <p>(영 제42조의6 제6항 및 제11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⑥본문)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전송요구 방법, 전송현황 내역 확인 방법 게재할 의무 ○ (⑥단서)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·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게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⑪본문) 정보전송자,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의 전송내역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. §42-5③각호의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전송요구 목적 2.전송요구 받는 자 3.전송받는 자 4.요구대상정보 5.정기전송요구 여부 및 주기 ○ (⑪단서)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보관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⑥본문) <좌 동> ○ (⑥단서)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게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⑪본문) <좌 동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. §42-5③각호의 사항 (본인전송요구의 경우 1·4호에 한함) ○ (⑪단서)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중계기관 통해 전송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보관 가능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기관 업무</p> <p>(영 제42조의9 제2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계전문기관은 일반·특수 전문기관 업무 함께 수행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단서 추가) <u>다만,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제외</u>

조항	현행(8.20.시행)	개정안
<p>전문기관 지정기준 (영 제42조의11 제1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능력 갖추 것(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제외) - 가. 재무구조 건전성·안전성 - 나. 자본금(중계 10억 일반특수 1억) - 다. 손배책임 이행 위한 보험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괄호 개정)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<u>가목 및 나목 적용 제외</u>
<p>전문기관 등 관리·감독 (영 제42조의15 제2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위는 정보전송자,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를 관리·감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는 자료제출 외에 <u>현장 점검 요구도 가능</u>
<p>플랫폼 등재 (영 제42조의16 제1항 및 제2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①등재) 제3자대상정보 전송자,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의 플랫폼 등재 ○ < 신 설 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①등재) <u>본인대상정보전송자, 제3자대상정보전송자,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의 플랫폼 등재</u> ○ (②내역제출) <u>플랫폼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플랫폼에 정보전송 내역 제출 가능</u>
<p>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(영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①대상) 개인정보처리자는 §41①열람, §43①정정·삭제, 법§35-2전송, 법§37①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(열람등요구)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 ○ (③요청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안부 장관 등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①대상) 개인정보처리자는 §41①열람, §43①정정·삭제, 법§35-2전송, 법§37①처리정지·동의철회 요구, <u>법§37-2결정 거부설명 등 요구(열람등요구)</u>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 ○ (③요청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은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안부 장관 등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 가능